

주요 개선내용 알림

□ 개요

- ① 클린사업 「공급업체 등록제」 및 「물품등록제」 폐지 (안전보건 시장 개방)
- ② 클린 물품의 가격산정기준 개선
- ③ 클린지원 품목 재정비

□ 주요 개선 내용

① 클린사업 「공급업체 등록제」 및 「물품 등록제」 폐지 (안전보건 시장 개방)

□ 개선방안

○ 클린사업 「공급업체 등록제」 폐지

- 현행 클린사업 「공급업체 등록제」를 전면 폐지, 사업주가 안전보건 시설 개선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공급업체를 직접 선정
- 다만,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판매업체, 취급물품 등의 정보안내 실시
 - * 클린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, 현재의 공급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판매업체의 정보를 제공(판매자 홍보 게시판 신설 등)
- 부적격 공급업체 관리를 위하여 현행 공급업체 제한기준은 현행 유지

○ 클린사업 「물품 등록제」 폐지

- 공급업체가 공단에 해당 물품을 등록 신청하고, 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물품과 가격을 등록하는 '닫힌 시장'에서 사업주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직접 선택, 지원 신청하는 '열린시장'으로 개편
- 공단은 물품등록 대신 품목에 대한 지원기준 및 안전보건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안내하고, 사업주는 이에 적합한 물품을 시장에서 자유로이 직접 선정,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 유연성을 부여

- 현재의 품목별 안전보건 설치기준(양산품 23종, 공사품 9종)을 단계적으로 수정 및 확대 제공, 사업주 물품 선택시 활용
 - * 고위험개선 품목을 우선 개발하고('20년 상반기 내), 기타 품목은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기준을 적용하되, 향후 필요성에 따라 별도 기준 마련 확대
 - * 안전인증대상품의 경우 안전인증여부 확인
- 시장에서 고객들에 의해 우수한 물품은 확산되고, 불량한 물품은 퇴출되도록 클린 홈페이지 내에 '사용후기 게시판' 등을 신설

② 클린 물품의 가격산정기준 개선

□ 개선방안

- 보조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물품가격 조정
 - 기존의 품목·사양별 물품가격 산정방식을 「평균 적정가격 → 시장조사*」를 통한 최저가격」 산정으로 개선
 - * 그 간 축적된 가격결정DB, 가격조사용역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활용
-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, 정액제 지원
 - 「품목·사양별 최저가격 × 근로자수 규모별 요율*」 산출, 「정액제」 형태로 지원
 - * 10인 미만 70%, 10인이상~50인미만 50%
 - 기존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개념을 폐지*, 사업주가 공단이 산정한 품목·사양별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
 - * 투자완료시 공단은 물품구매 사실을 확인하고,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

③ 클린지원 품목 재정비

□ 개선방안

○ 지원 중단(기존 품목 中)

- 기존 클린사업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및 구인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, 최근의 **정부정책 방향인 사고사망 예방과의 사업연계성이 부족한** 측면이 있음.
- 적재대·공구대 등 **정리정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작업환경 개선 위주의 품목, 지원 실효성이 낮은 품목** 등은 6개월 예고 후 '20년 하반기부터 **지원 중단***(45종)

* 연초 지원중단 내용을 클린 홈페이지에 공지 후 6개월 유예기간 부여 <붙임1 참조>

○ 지원 축소(기존 품목 中)

- 기존 클린인정 품목을 **재해예방 기여도에 따라 분류, 품목일몰제를 적용, 최소 1년 ~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축소**

※ 차후 안내

○ 고위험개선 신규 품목 지원

- 사망위험도, 지원사유, 시장확장성 등을 분석, **사고사망 예방효과, 안전보건수준 및 시장의 변화 유인 가능성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고위험개선 신규품목을 발굴 지원**

- * 1) 백호, 로우더 안전장치(후방감지장치, 충돌방지장치 등)
- 2) 소형 타워크레인(3톤미만) 안전장치(경광등, 영상장치 등)
- 3) 천장크레인(3톤미만 미수검품) 교체설치

※ 고위험개선 신규품목 개발시 추가 공지 예정

○ 고위험개선 품목 전환

- 기존 클린인정 품목 중 **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품목은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전환(15종*)**

- * 고소작업대, 천장크레인 원격제어기, 로울러기 역회전장치, 사출기·프레스 금형교환장치, 사출제품취출 자동화설비 등 15종 <붙임2 참조>

붙임 1. 클린사업 지원제외 지원품목(안)

순번	설 비 명	지원 중단
1	작업장 바닥 기초 및 도장	○
2	근로자 신체조건에 맞는 작업발판	○
3	위험물질 제조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	○
4	작업장 안전통로 구분표시	○
5	계단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	○
6	비상구 표지판비상유도등	○
7	기동스위치 잠금장치 표지판(Lock-out, Tag-out)	○
8	전력방지기능 내장 직류이크용접기(교체에 한함)	○
9	크레인 충돌 및 진동방지 조치, 보수 점검시 안전조치	○
10	크레인 출입문 잠금장치(운전실 타입)	○
11	방호덮개(검정폼) 부착 탁상용 연삭기(교체에 한함)	○
12	절연용 방호구 및 확산작업용 기구	○
13	다이캐스팅기 이형제 스프레이 장치	○
14	탁상용드릴기(교체에 한함) 및 드릴날 방호덮개 등	○
15	고압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	○
16	용접기 외함접지 및 누전차단기	○
17	전기이크용접기의 절연홀더	○
18	용접작업공정 용접전선 자동송급회수장치 등	○
19	이중절연구조의 전동공구(교체에 한함)	○
20	전자파 차폐설비	○
21	주피수조절 귀덮개	○
22	살수 습기유지 설비	○
23	분진작업 대체설비	○
24	분진설비의 산업용 바닥청소기(탑승식 제외)	○
25	유해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	○
26	습기제거 환기설비	○
27	유해물질 취급작업장 세척 세안시설	○
28	높이 또는 각도조절 기능 작업대	○
29	인력작업에 의한 중량물취급을 대체 기계장치 및 설비	○
30	탄력성 및 내충격성 작업장 바닥재	○
31	높낮이조절 컴퓨터 작업대 및 의자	○
32	유해광선 차단판	○
33	크레인 조작용 전기회로 전압 감압조치	○
34	인쇄 용제 자동투입기	○
35	고열환기 및 온습도조절팬 포함	○
36	호스릴(고압공기, 가스, 냉, 온수용)	○
37	전도방지 바닥청소기	○
38	전동식 계단운반기	○
39	인전화 분진제거기	○
40	보호구 보관함	○
41	이동용 구급함	○
42	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적재대	○
43	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공구함	○
44	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작업대	○
45	전동이동식 대차	○

붙임 2. 고위험개선 품목 전환(안)

순번	설 비 명	고위험전환
1	프레스 전단기 원료송급 제품취출 자동화설비	○
2	프레스 금형교환장치	○
3	크레인 무선원격제어기	○
4	로울라기의 역회전장치	○
5	주형조형기 원료송급 제품취출 자동화설비	○
6	다이캐스팅기 원료송급 제품취출 자동화 설비	○
7	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	○
8	사출제품 취출 자동화설비	○
9	파쇄 분쇄기 독립된 발판 및 안전 난간대 등	○
10	지게차 전후방 조명등	○
11	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	○
12	안전대 부착설비	○
13	고소작업대(안전인증품에 한함)	○
14	스폿(SPOT)용접 등의 용접공정 자동화설비	○
15	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	○